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중앙상담실은 건강·법률·세무·보험·가정·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e메일(nyopinion@koreadailyny.com), 전화(718-360-7700)를 이용, 중앙상담 담당자 앞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
송주연 변호사

2024 회계연도 취업비자 추첨 완료

추가 추첨 여부, 6월 30일 지나야 알 수 있어

문: 단기취업비자 접수를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사전등록에 등록을 완료하였고, 지난 주말에 이에 관한 무작위 추첨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다. 이번 발표에 추첨이 되지 않았다면 올해는 더는 기회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다. 그리고 추가 추첨분에 해당할 수 있는 미국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 이번 추첨 결과가 최종 통보인지, 추가 추첨 기회가 석사 학위자에게 더 있는지 알고 싶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STEM OPT가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이 OPT를 더 사용하고 취업비자를 시작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

답: 올해 10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한 2024 회계연도 단기 취업비자의 접수를 위한 추첨 결과가 지난 주말에 발표되었다. 올해는 추첨을 위한 사전등록을 3월 1일 정오부터 시작하여 3월 17일 정오까지였으나, 이민국의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그다음 월요일인 3월 20일 오후 5시까지 등록일을 연장하여 사전등록을 완료하였다. 이렇게 등록된 신청자 중 올해 취업비자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신청자들의 발표가 지난 주말에 있었고, 이민국은 곧이어 올해에 할당된 비자 개수를 초과하여 온라인 사전등록이 되었고, 1차 추첨이 마무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추첨 발표는 온라인 사전등록을 하기 위해 생성된 이민국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첨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등록 내용에 'Selection Notice'가 첨부되어 있어, 청원서 접수 때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이번에 추첨이 된 신청자의 취업비자 청원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반드시 접수되어야 하며, 접수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질문자의 경우,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수료한 경우로, 할당된 추가 2만 개의 취업비자 쿼터에 해당한 경우이다. 이 경우, 일반 신청자에게 주어지는 6만5000개의 쿼터에서 추첨을 먼저하고, 여기에서 추첨 되지 않은 미국 석사학위자는 석사학위자에게만 주어지는 2만 개의 추가 쿼터에서 추첨이 한 번 더 이루어진다.

이 모든 과정이 완료된 후 이민국은 추첨결과를 발표하므로, 지난 주말에 발표된 추첨결과가 1차 추첨의 최종 결과이고, 미국 석사 학위자는 이미 두 번의 추첨이 완료된 결과이다. 올해 만일 추가 추첨이 있으려면, 이번 발표에서 추첨이 된 모든 신청자가 청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가 된다. 그러므로 6월 30일까지 접수가 완료된 후여야만 추가 추첨이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

참고로, 작년의 경우에는 추첨이 되었으나 접수하지 않을 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약 13만 개의 신청자를 1차 추첨에서 선택했고, 6월 30일까지 접수된 청원자의 수가 할당된 비자 개수를 채우게 되어 3월 추첨 이후 추가 추첨은 없었다. 올해의 경우는 아직 몇 개의 온라인 사전등록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중 몇 명의 신청자를 1차 추첨에서 선택했는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몇 년 전 이민국에서 처음 취업비자를 시작하는 신청자의 청원서에 근무 시작일이 10월 1일이 아닌 더 미래의 날짜가 기재되면 청원서를 거절하고 했다. 하지만 이민국은 이를 곧 정정하였고, 처음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근무 시작일은 10월 1일 이전은 될 수 없으나, 10월 1일 또는 뒤에 시작하면 된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경우 만일 현재 남아있는 OPT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조금 더 사용한 후 시작일을 잡아도 된다. 단, 청원서의 접수일은 4월 1일에서 6월 30일 사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에 함께 접수될 임금 신청서인 Labor Condition Application에 기재될 수 있는 근무 시작일은LCA를 작성하는 날짜에서 최장 6개월 뒤의 날짜만 근무일로 지정이 되므로, 취업비자 근무 시작일을 너무 늦출 수도 없기는 하다.

이민국에서 취업비자 사전 등록자 발표가 있었으나, 많은 경우 이 발표가 최종결과인지 궁금해한다. 4월 1일부터 접수를 할 수 있는 추첨은 이번 발표가 최종이므로 추첨이 된 경우라면 청원서 접수 준비를 시작하고, 추가 추첨 여부는 6월 30일이 지나야 알 수 있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plaw.com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중앙상담실은 건강·법률·세무·보험·가정·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e메일(nyopinion@koreadailyny.com), 전화(718-360-7700)를 이용, 중앙상담 담당자 앞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
송주연 변호사

2024 회계연도 취업비자 추첨 완료

추가 추첨 여부, 6월 30일 지나야 알 수 있어

문: 단기취업비자 접수를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사전등록에 등록을 완료하였고, 지난 주말에 이에 관한 무작위 추첨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다. 이번 발표에 추첨이 되지 않았다면 올해는 더는 기회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다. 그리고 추가 추첨분에 해당할 수 있는 미국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 이번 추첨 결과가 최종 통보인지, 추가 추첨 기회가 석사 학위자에게 더 있는지 알고 싶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STEM OPT가 아직 기간이 남았는데, 이 OPT를 더 사용하고 취업비자를 시작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

답: 올해 10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한 2024 회계연도 단기 취업비자의 접수를 위한 추첨 결과가 지난 주말에 발표되었다. 올해는 추첨을 위한 사전등록을 3월 1일 정오부터 시작하여 3월 17일 정오까지였으나, 이민국의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그다음 월요일인 3월 20일 오후 5시까지 등록일을 연장하여 사전등록을 완료하였다. 이렇게 등록된 신청자 중 올해 취업비자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신청자들의 발표가 지난 주말에 있었고, 이민국은 곧이어 올해에 할당된 비자 개수를 초과하여 온라인 사전등록이 되었고, 1차 추첨이 마무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추첨 발표는 온라인 사전등록을 하기 위해 생성된 이민국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첨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등록 내용에 'Selection Notice'가 첨부되어 있어, 청원서 접수 때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이번에 추첨이 된 신청자의 취업비자 청원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반드시 접수되어야 하며, 접수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질문자의 경우,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수료한 경우로, 할당된 추가 2만 개의 취업비자 쿼터에 해당한 경우이다. 이 경우, 일반 신청자에게 주어지는 6만5000개의 쿼터에서 추첨을 먼저하고, 여기에서 추첨 되지 않은 미국 석사학위자는 석사학위자에게만 주어지는 2만 개의 추가 쿼터에서 추첨이 한 번 더 이루어진다.

이 모든 과정이 완료된 후 이민국은 추첨결과를 발표하므로, 지난 주말에 발표된 추첨결과가 1차 추첨의 최종 결과이고, 미국 석사 학위자는 이미 두 번의 추첨이 완료된 결과이다. 올해 만일 추가 추첨이 있으려면, 이번 발표에서 추첨이 된 모든 신청자가 청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가 된다. 그러므로 6월 30일까지 접수가 완료된 후여야만 추가 추첨이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

참고로, 작년의 경우에는 추첨이 되었으나 접수하지 않을 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약 13만 개의 신청자를 1차 추첨에서 선택했고, 6월 30일까지 접수된 청원자의 수가 할당된 비자 개수를 채우게 되어 3월 추첨 이후 추가 추첨은 없었다. 올해의 경우는 아직 몇 개의 온라인 사전등록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중 몇 명의 신청자를 1차 추첨에서 선택했는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몇 년 전 이민국에서 처음 취업비자를 시작하는 신청자의 청원서에 근무 시작일이 10월 1일이 아닌 더 미래의 날짜가 기재되면 청원서를 거절하곤 했다. 하지만 이민국은 이를 곧 정정하였고, 처음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근무 시작일은 10월 1일 이전은 될 수 없으나, 10월 1일 또는 뒤에 시작하면 된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경우 만일 현재 남아있는 OPT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조금 더 사용한 후 시작일을 잡아도 된다. 단, 청원서의 접수일은 4월 1일에서 6월 30일 사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에 함께 접수될 임금 신청서인 Labor Condition Application에 기재될 수 있는 근무 시작일은LCA를 작성하는 날짜에서 최장 6개월 뒤의 날짜만 근무일로 지정이 되므로, 취업비자 근무 시작일을 너무 늦출 수도 없기는 하다.

이민국에서 취업비자 사전 등록자 발표가 있었으나, 많은 경우 이 발표가 최종결과인지 궁금해한다. 4월 1일부터 접수를 할 수 있는 추첨은 이번 발표가 최종이므로 추첨이 된 경우라면 청원서 접수 준비를 시작하고, 추가 추첨 여부는 6월 30일이 지나야 알 수 있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plaw.com